

제399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2년8월23일(화)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5801)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다. 기상청 소관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5802)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다. 기상청 소관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9)
4.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73)
5.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60)
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5)
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10)
8.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13)
9.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29)
10.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65)
11.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46)
1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38)
13.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91)
14.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19)
15.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65)
1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03)
1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89)
18.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4)
19.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0)
20.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93)
2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45)
2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14)
2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43)
2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36)
25.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46)

26.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37)
27.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43)
28.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36)
29.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42)
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12)
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70)
32.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15)
3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89)
3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78)
3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58)
3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66)
3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57)
3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41)
3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99)
4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44)
4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56)
4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70)
4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82)
4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28)
45.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024)
4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11)
4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86)
4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39)
4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96)
5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92)
5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15)
52. 윤석열 당선자가 주장한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근거가 되는 최저임금법 제4조 조문 삭제 요청에 관한 청원(김수근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90)
53.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5801) 6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다. 기상청 소관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5802) 6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다. 기상청 소관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9) ...	7
4.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73)	7
5.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60)	8
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5) ...	8
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10) ...	8
8.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13)	8
9.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29)	8
10.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65)	8
11.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46)	8
1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38) ...	8
13.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91)	8
14.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19)	8
15.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65)	8
1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03)	8
1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89)	8
18.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4)	8
19.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0)	8
20.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93)	8
2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45)	8
2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5114)	8
2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43)	8
2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36)	8
25.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46)	8
26.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37)	8
27.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43)	8
28.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36)	8
29.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42)	8
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12)	8
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70)	8
32.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15)	8
3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89) ...	8
3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78) ...	8
3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58)	8
3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66)	8
3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57) ...	8
3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41) ...	8
3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99)	8

4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44)	8
4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56)	8
4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70)	8
4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82)	8
4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28)	8
45.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024)	9
4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11)	9
4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86)	9
4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39)	9
4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96)	9
5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92)	9
5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15)	9
52. 윤석열 당선자가 주장한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근거가 되는 최저임금법 제4조 조문 삭제 요청에 관한 청원(김수근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90)	9
53.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1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9) ..	11
4.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73)	11
5.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60)	11
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5) ..	11
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10) ..	11
8.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13)	11
9.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29)	11
10.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65)	11
11.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46)	11
1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38) ..	11
13.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91)	11
14.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19)	11
15.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65)	11
1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03)	11
1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89)	11
18.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4)	11
19.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0)	11
20.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93)	11
2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45)	11
2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14)	11
2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43)	12
2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36)	12
25.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46)	12

26.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37)	12
27.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43)	12
28.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36)	12
29.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42)	12
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12)	12
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70)	12
32.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15)	12
3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89) ...	12
3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78) ...	12
3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58)	12
3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66)	12
3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57) ...	12
3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41) ...	12
3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99)	12
4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44)	12
4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56)	12
4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70)	12
4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82)	12
4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28)	12
45.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024)	12
4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11)	12
4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86)	12
4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39)	12
4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96)	12
5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92)	12
5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15)	12
52. 윤석열 당선자가 주장한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근거가 되는 최저임금법 제4조 조문 삭제 요청에 관한 청원(김수근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90)	12

(10시02분 개의)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전해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 그리고 유튜브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환경부·고용노동부·기상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받고 의결한 후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과 청원을 상정하여 심사하며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청원 중 심사기간이 도과된 청원에 대하여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5801)**가. 환경부 소관****나. 고용노동부 소관****다. 기상청 소관****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5802)****가. 환경부 소관****나. 고용노동부 소관****다. 기상청 소관**

(10시03분)

○위원장 전해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임이자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대리 임이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임이자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환경부·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 4건, 주의 35건, 제도개선 33건을 시정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에 있어 관련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하도록 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및 실시간 모니터링체계 구축을 확대함에 있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연계추진대책을 마련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홍수위험지도 등 홍수 대응 정보시스템 정비를 조속히 완료하고 도시침수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기준의 규제완화 시 안전확보대책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소관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주의 27건, 제도개선 38건을 시정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실태 조사와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여 사업 규모를 면밀하게 추계하고 집행실적이 부진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안전투자 혁신사업에서 적정 수준의 개별단가 산정과 영세사업장의 보조비율 확대 등을 통하여 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보험기금의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하는 등의 내용으로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상청 소관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주의 9건, 제도개선 7건을 시정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부·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해철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에 애써 주신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확인해서 그분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신 것으로 보고 토론을……

의결하도록 하는데요. 다만 우리 환경부장관과 그리고 환경부에 계신 배석하신 분들한테 이야기 하는데 이번에 시정사항이라든지 보시면 환경부 시정사항이 4건 있고 고용노동부, 기상청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 환경부가 주의, 제도개선이라든지 등등이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결하고 나서 후속조치를 하겠지만 특히 환경부장관은 그런 후속조치에 대해서 각별하게 유의해서 잘하실 수 있게 하고 필요하면 국회 상임위에도 보고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해철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안건의 자구 수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의결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정부 측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전혜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결산소위 심사 과정에서 각 사업별 결산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임이자 위원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법정부담금 수납률 개선, 홍수대응체계 정비, 국고보조사업 집행 관리 철저 등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환경부 소관 예산과 기금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산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해철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존경하는 전혜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고용노동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결산소위에서 세심한 검토를 해 주신 임이자 위원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하고 미래지

향적인 노동시장 구축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책 추진과 내년도 예산심의 및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심사, 의결을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해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상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유희동 존경하는 전혜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심의 의결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세심하게 검토하고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임이자 위원님과 소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짚어 주신 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 마치기에 앞서 어제 날짜로 새로 보임한 기상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장동언 차장입니다.

(인사)

다시 한번 결산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해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과 청원을 상정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회법상 숙려기간과 자동상정기간을 고려하여 간사 위원님 간의 합의에 따라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지 45일,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50일, 청원의 경우 30일이 도과한 안건을 상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9)

4.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73)

5.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5060)
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5)
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10)
8.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13)
9.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29)
10.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65)
11.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946)
1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38)
13.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991)
14.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19)
15.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965)
1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03)
1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89)
18.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604)
19.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5600)
20.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93)
2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45)
2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14)
2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543)
2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36)
25.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46)
26.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4937)
27.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5243)
28.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36)
29.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42)
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012)
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670)
32.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15)
3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89)
3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78)
3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58)
3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66)
3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5157)
3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5241)
3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5199)
4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5244)
4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5256)
4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5270)
4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5482)
4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28)

45.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024)

4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11)

4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86)

4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39)

4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96)

5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92)

5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615)

**52. 윤석열 당선자가 주장한 지역별, 업종별 최저
임금 차등적용의 근거가 되는 최저임금법 제4조
조문 삭제 요청에 관한 청원**(김수근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90)

(10시13분)

○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 52항까지, 이상 49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률안과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1항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을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자는 주장이 현 정부 들어서 힘을 받고 있습니다. 급기야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차등적용 여부, 방법 등에 대해 연구를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차등적용은 법적 근거가 없고 업종별 차등적용은 법에 근거가 있더라도 이 법의 제정 이후 단 한 차례 시행에 불과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는 주장은 차등적용을

통해 더 낮은 임금을 받게 되는 지역이나 업종의 해당 노동자에 대해 명백한 차별인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도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게 하는 법률 조항을 정비하고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의 충실한 작성 및 보존을 통해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올해 5월 16일에 이 법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본 의원의 법 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해 채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5만 명의 국민이 동의한 같은 내용의 법 개정 청원서가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 접수되어 있기도 합니다.

새로이 만들어지는 노동법·질서의 경우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일부 조항의 폐지를 비롯해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해야 하는 것이 입법자인 국회의원의 역할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법 개정 취지와 국민 열망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동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해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 45항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존경하는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고용노동부 소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노사관계 발전방안을 논의해 오며 따라 동 법에 따른 노사관계발전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없이 사실상 사문화되었습니다.

이에 동 위원회를 폐지함과 동시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협의를 위한 노사민정협력증진협의회를 신설하여 노사관계 발전 논의기구를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해철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요약본 1페이지입니다.

시간관계상 2건에 대해서만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김용판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법 개정안은 품질기준과 보관기준을 충족하는 순환골재가 건설폐기물에서 제외됨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순환골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그 사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순환골재 품질기준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자원순환기본법상 순환자원 인정제도의 규정례와 같이 이 법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골재를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그 보관기준 위반 시 실효성 확보 수단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임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곰 사육 금지 및 보호 특별법안은 사육곰 관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별도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반달가슴곰 불법사육 방지 및 열악한 사육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어서 2쪽입니다.

다만 불법증식 사례는 소수 농가에서만 발생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규제방안 마련을 위해 별도 특별법을 도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하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해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과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모 전문위원입니다.

요약본 1쪽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30건과 청원 1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첫째, 재산 및 종합소득이 일정한 기준 미만인 자영업자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제고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현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방식이 기준보수 선택을 통한 임의가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도덕적 해이 또는 기준보수의 역선택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체납액에 대해 국가가 대납할 수 있도록 하고 대납금에 대한 구상 및 결손처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유지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이나 임금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성실히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영업자의 납부 의지를 저해시킬 우려 등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기타 29건의 법률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다음은 마지막 청원입니다.

20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2항 김수근 외 5만 인이 동의한 국민동의청원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상 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업종별 차등적용의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을 제거하고 근로자에게 동일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업종 간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인해 구분기준을 정하는 것이 어려운 점, 영세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낮은 최저임금의 적용은 최저임금 자체를 낮춰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자 한 제도 도입 취지가 훼손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반대하는 입장과 소상공인과 대기업을 같은 선상에 놓고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각 사업체의 임금지불 능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상황이 악화되는 데 대하여 업종별 구분적용으로 완충지대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찬성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심사 과정에서 찬반 의견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해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려 합니다. 시간은 5분으로 하고요.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두 분이 계시는데요. 김형동 위원님하고 김영진 위원님 두 분이 계시는데 지금 의결정족수가 돼서 먼저 의결을 하고 나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 종결을 전제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21항까지 법률안은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51항까지의 법률안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고자 하며 의사일정 제52항의 청원 역시 법률안 개정에 대한 내용으로 관련 법률안과 함께 심사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이자 위원님 그리고 김영진 위원님, 소위원장님으로서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의결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53.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시23분)

○위원장 전해철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3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청원 중 국회법 제125조제5항에 따른 심사기간이 도과한 청원에 대하여 제6항에 따라 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하려는 내용입니다.

추가 연장이 필요한 청원과 그 심사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 2건의 청원은 심사가 더 필요하므로 관례에 따라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인 2024년 5월 29일까지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9)

4.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73)

5.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5060)

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5)

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10)

8.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13)

9.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29)

10.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65)

11.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946)

1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38)

13.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991)

14.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19)

15.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965)

1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03)

1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89)

18.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604)

19.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5600)

20.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93)

2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45)

2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14)

2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543)
2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636)
25.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046)
26.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의안 번호 2114937)
27.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 발의)(의안 번호 2115243)
28.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536)
29.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542)
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012)
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670)
32.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315)
3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289)
3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478)
3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158)
3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566)
3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 발의)(의안 번호 2115157)
3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 발의)(의안 번호 2115241)
3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199)
4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244)
4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256)

4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270)
4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482)
4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228)
45.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024)
4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511)
4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686)
4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139)
4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196)
5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292)
5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615)
52. 윤석열 당선자가 주장한 지역별, 업종별 최저 임금 차등적용의 근거가 되는 최저임금법 제4조 조문 삭제 요청에 관한 청원(김수근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90)

○위원장 전해철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동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 감사합니다.

법률안 검토보고 관련돼서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나와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오창석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검토요약본 2페이지, 의사일정 제6항 존경하는 박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장관님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중국적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취지인데요. 영업정지가 더 큰 겁니까, 과징금이 상대방의 부담이 더 큰 겁니까? 어떤 게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영업정지가 크다고 봅니다.

○**김형동 위원** 혹시 영업정지하지 않고, 물 이용에 부담이 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가 아니라 그냥 과징금으로 버티는 그런 폐해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저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영업정지 처분 시에,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형동 위원** 혹시 제도상 병과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경과한 경우요?

○**김형동 위원** 영업정지도 하고 과징금도 내는 경우는 없는지 여쭙습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일단 영업정지 시에 주민 생활 불편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과징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형동 위원** 장관님께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본 위원이 이쪽 상임위원회에 오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안동댐 수계에 석포제련소라고 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40여 년 동안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그쪽에서는 소송을 해 가지고 자기들의 억울함을, 당연한 권리지만 영업을 잠깐 잠깐 중단됐다가 다시 재기하는 경우가 수차례 반복되고 있는데요.

혹시나 상수원에 오염물을 방출하는 기업이 과징금을 핑계로 영업을 계속 지속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존경하는 박대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법률안이지만 정부가 꼼꼼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하류에 있는, 수계에 있는 국민들이 물을 이용하고 먹는 데 불편함이 없고, 불편함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그러겠습니다. 잘 살펴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고용노동부장관께 여쭙보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수진 의원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최저임금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마 더 강화하는 취지로 지역별 그다음에 직역별 차등을 두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관께서 생각하는 최저임금제도,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운영하는 방향이라고 그럴까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

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이게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법 제도를 도입했을 때 그 취지는 여러 가지 유연성을 통해서 법 적용에 운용의 묘를 기하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왕에 있는 제도를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형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존경하는 전용기 의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박광온 의원님께서 냈습니다.

장관께서도 경기지노위지요, 상임위원 하시면서 아마 기간제노동자들이 갑자기 계약이 해지되는 사건들이 많이 오고 이 부분이 법원에 가서 판례로 즉 형성되어 있는데 제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여쭙보겠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그다음에 박광온 의원님이 이렇게 기간제노동자들이 갑자기 계약 해지됐던 케이스 그다음에 해고됐다고 주장하는 케이스와 관련해서 이미 법원에 많은 판례가 누적되어 있는데 차제에 두 분 의원님들이 낸 법률안에 더해서 이분들의 고용안정과 관련된 정부의 법률안 내지 제도개선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장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여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차별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법안의 경우에 예컨대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제로 근무하는 경우에 1개월 전에 사전 예고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통상임금 한 달 치를 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그 법 개정안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고용안정과 차별을 해소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게 악용될 가능성이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법을 악용해서 3개월, 3개월로 단기계약직으로 기간제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살펴서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차별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형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해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간단하게, 오늘 정부 발의안으로 첫 번째 올라온 안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이 법을 주요하게 발의한 이유가 있나요,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것은 과거 정부부터 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비한다라는 그런 기조하에 꾸준히 개선해 해 왔던 내용이고 나아가서는 그런 측면보다는 이것이 실적이 없이 그동안 형해화됐던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다양한 사회적 대화 기구가 있는데,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경사노위 등등이 있는데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해서 노사관계발전위원회를 없애는 대신 이것을 대체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협업을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쭙보는 거예요. 그동안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그다음에 경사노위가 존재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논의를 진행해 왔는데 노사관계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 노사민정협력증진협의회를 신설하는 안이란 말이에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지역 노사민정위원회와 경사노위와 노사민정협력증진협의회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용정책심의회와의 고용정책 심의 기능 중복 측면 이것까지도 제안하고 있는데 뭘 차이가 있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고용정책심의회는 광역단위로 고용과 관련된 내용을 심의하는 것이고 이것이 있는 경우에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한 것으로 갈음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기왕에 있는 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운영의 내실화를 기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업을 강화하고, 그래서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는 한편으로 기초자치단체에 노사민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포괄할 수 없는 기초자치단체까지 포괄하고 내용상 고용정책 이외에 다양한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내용들을 협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과연 이게 실효적으로, 그러니까

현재는 22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운영을 잘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고 해서 결산심사에서도 잘한 노사민정위원회는 그냥 매년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심사평가한 우수 노사민정협의회로 결정이 돼서 포상을 받는데 그렇지 못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가 50%가 넘어요, 어제 결산심사에서 보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노사민정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인 협의를 고용노동부가 더 진력해 달라 하는 게 어제 결산심사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역 노사민정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활동이 그렇게 크지 않은 가운데 또 노사민정협력증진협의회를 만든다는 것은 전제가 지역 노사민정협의회가 잘 운영이 돼 나가면서 그것과 중앙과의 연계를 잘 하자라는 취지인데 지역 노사민정위원회도 잘 안 되고 있는, 50% 이상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제안이 좀 약간 앞서 나간 게 아닌가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의견 한번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사회적 대화를 중층적으로 지역·업종별로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지역 노사민정협의회가 양극화돼 있습니다. 잘하는 데는 잘 하고 못 하는 데는 못 하는데 그런데 이번에 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거의 형해화된 이 내용을 노사민정협력증진협의회로 중앙과 지자체 간의 협업을 활성화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 현재 지원책도 좀 부족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데 머금가게 미흡한 그런 지자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진 위원** 소위에서 좀 더 논의를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해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청하신 위원님들 대체토론은 다 마쳤고요. 추가로 법안 관련 대체토론하실 분은 안 계시지요?

그러면 대체토론은 마치고, 의결은 이미 했습니다.

이은주 위원님은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오늘 현안 관련해서는 그동안 상임위에서 두

분 간사님의 협의에 의해서 쪽 해 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위원님들이 현안 관련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이은주 위원님은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아니시지요?

○이은주 위원 예.

○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이은주 위원님의 질의 내지 토론을 듣고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의 토론은 마칠까 합니다.

이은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장관님, 채용비리, 그러니까 채용비리 관련해서 지금 국가, 지자체, 공기업, 민간기업, 교육현장까지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아마 고용노동부도 업무보고 때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 채용비리는 무죄입니다. 우리 형사법은 채용 청탁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지 그 청탁이 채용 업무를 방해했을 때만 업무방해나 배임수재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공공기관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뇌물수수로 처리하고.

그래서 채용비리를 뽑기 위해서, 채용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동의합니다.

○이은주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받고 공정채용법 전면 개정하겠다고 해서 얼마나 진척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까지 방향도 내용도 나와 있는 게 고용노동부에 없어요,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보고가 됐는데.

그래서 이 법안 언제 논의가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발의한 채용비리 처벌 특별법을 비롯해서 국회에 3건의 법안이 우리 상임위에 발의가 돼 있습니다. 기이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면서 그리고 부처의 의견을 더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저희들이 28개 법률이, 존경하는 류호정 의원님께서 제정법안을 제출한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공정채용법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하는 건 알고 계시라고 보고요.

세 가지 측면에서 지금 내용을 검토하고 전문가 포럼을 통해서, 연말까지는 저희가 법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는데 내용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절차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법의 이행력을 강화 내지는 확대하기 위해서 법 적용의 범위를 조정하고 하는 등 지금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기이 발의된 법안이 있으니 그것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서 부처 의견을 더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까.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에 고용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무직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공공부문에 근무하는 공무직 인사, 노무 관리와 처우에 대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설치된 기구입니다. 사실 이 기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이후에 인사, 노무 관리가 기관별·직종별로 다 달라서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인식 속에서 출발을 한 건데 이를 위해서 또 분야별 협의회를 운영하겠다고 약속도 했는데 이제까지 한 번도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지금……

○이은주 위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과 관련해서 분야별 협의회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자회사 문제 같은 경우 전혀 진척이 없어요.

그래서 아시지만 자·모회사 간 계약 같은 경우는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인건비가 임의로 낙찰률을 적용한 저가 낙찰로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중 노임단가 적용도 총액인건비에 묶여 있어서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회사 노사관계는 자회사가 알아서 풀수 없는 구조예요. 장관님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공무직위원회 위원장이 바로 노동부장관인 만큼 장관님이 책임 있게 공공기관 자회사 문제에 대해서 공무직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좀 보여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다만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노동자와 기간제노동자들에 관한 체계적인 인사 및 노무 관리를 위해서 총리 훈령에 따라서 설치된 것입니다. 자회사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이은주 위원 아니아니……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지금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관행 개선이라든가 모자 간의……

○이은주 위원 장관님, 잠깐만요. 공무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자회사 형태로 전환했기 때문에 자회사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지 그냥 자회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그냥 정규직이 됐으면 이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없지요. 자회사로 정규직을 전환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가 있다 인정을 하고 분야별 협의회를 운영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걸 그렇게 다르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제가 그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의원실로 보고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해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대체적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김형동 위원님이 짧게 토론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니까 김형동 위원님 발언까지 듣고 대체적인 토론은 마무리……

○김형동 위원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그냥 반대라기보다는 의견만 좀……

○위원장 전해철 아니, 그래서요……

○이은주 위원 왜, 장관님 답변하신 건데……

○김형동 위원 아니아니, 잠깐 여쭙보고……

○위원장 전해철 김형동 위원님, 잠깐만요. 아니 김형동 위원님, 저 보시고……

제가 지금 발언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김형동 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해철 김형동 위원님 짧게 발언하시고 대체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김형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걸 그냥 의견이고 또 장관께 조속하게…… 이 부분은 아마 당시 추진했던 담당 국장이 이번에 본부장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정부 시절에 5년 전에 공무직 전환이 공공기관에서는 가장 핫이슈였고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노동부 소관 공무직도 있고 각 정부부처 공무직들이 그냥 이른바 약속은 하고 정책은 집행이 됐는데 그 결과물은 오히려 온데 간 데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도 아마 그런 부분이 답답해서 장관께 상황이 어떤지를 확인해 달라라고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공무직이, 현재 이른바 공무직이라고 돼 있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공공기관만 포함해 가지고, 민간은 아예 지금 파악하기도 어려운 그런 혼란스러운 지경인데요. 전체적으로 공공기관부터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컨트롤타워가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그동안에 무리하게—이건 주관적 평가입니다마는—했던 부분에 대해서 평가도 한번 하시고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것이 공무원 사회에서도 질서 형성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당사자인 그분들에게도 앞으로 공무직 내지, 명칭도 공무직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정권은 바뀌었습니다마는 정권이 바뀐 것 때문에 제도가 갑자기 바뀌거나 또 그분들에게 피해는 없어야 된다는 취지하에서 장관께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 좋은 지적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말을 보탬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총리 훈령에 따라서 공무직위원회가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계나 이해관계자들은 이것을 더 연장하자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방금 이은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살펴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께 상세

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해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 토론 포함해서 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김영진	김형동	노웅래	박대수
우원식	윤건영	이수진(비)	이은주
임이자	전용기	전해철	정찬민
지성호	진성준		

○출장 위원(1인)

이학영

○청가 위원(1인)

이주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전문위원	김원모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환경부			
장관	한화진		
차관	유제철		
기획조정실장	이영기		
기후탄소정책실장	금한승		
물관리정책실장	신진수		
자연보전국장	김종률		
자원순환국장	정선화		
물관리위원회지원단장	이승환		
감사관	정광명		
정책기획관	이창흠		
기후변화정책관	안세창		
녹색전환정책관	장기복		
대기환경정책관	박연재		
물통합정책관	박재현		
물환경정책관	류연기		
수자원정책관	손옥주		
기획재정담당관	이채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명규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욱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차관	권기섭
기획조정실장	김덕호
고용정책실장	김영중
노동정책실장	이정환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경희
통합고용정책국장	하형소
대변인	정경훈
감사관	김영현
정책기획관	박준호
고용지원정책관	권태성
노사협력정책관	권창준
근로기준정책관	최현석
근로감독정책단장	박종필
공공노사정책관	이상복
산업안전보건정책관	김철희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최태호
청년고용정책관	이현욱

기상청

청장	유희동
차장	장동언
예보국장	정관영
관측기반국장	연혁진
기후과학국장	이미선
기상서비스진흥국장	이정환
지진화산국장	유상진

【보고사항】

○의안 회부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2022. 8. 17. 조명희·김석기·김선교·박덕흠·배준영·성일중·양향자·이명수·임병헌·최연숙·최준식·태영호·홍문표·황보승희 의원 발의)

8월 18일 회부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2022. 8. 18. 조명희·김석기·박덕흠·배준영·성일중·양향자·이명수·임병헌·최연숙·최준식·태영호·홍문표·황보승희 의원 발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22. 8. 18. 홍익표·김영배·김희재·문정복·박상혁·이병훈·이원욱·이장섭·이학영·홍성국·신영대 의원 발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2. 8. 18. 이주환·권명호·金炳旭·김용관·

김학용 · 서일준 · 안병길 · 이명수 · 전봉민 · 정찬민 의원 발의)

소음 · 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2. 8. 18. 이주환 · 김용환 · 안병길 · 권명호 · 정찬민 · 이현승 · 이명수 · 전봉민 · 김학용 · 박대수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

(2022. 8. 18. 이용선 · 강득구 · 김영호 · 심상정 · 용혜인 · 윤미향 · 이용빈 · 이학영 · 전혜숙 · 홍성국 의원 발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

(2022. 8. 18. 이성만 · 신정훈 · 송갑석 · 강득구 · 허종식 · 정일영 · 민병덕 · 이동주 · 이학영 · 송옥주 · 김교홍 · 윤미향 의원 발의)

이상 6건 8월 19일 회부됨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2022. 8. 19. 정일영 · 김교홍 · 김두관 · 김병기 · 김병욱 · 김주영 · 노웅래 · 서삼석 · 송기현 · 안규백 · 양경숙 · 이성만 · 주철현 · 한준호 · 황운하 의원 발의)

8월 22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2022. 8. 18. 김선교 · 김상훈 · 박대수 · 하영제 · 권명호 · 이종배 · 성일중 · 구자근 · 김석기 · 조은희 · 안병길 의원 발의)

8월 1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상임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22. 8. 19. 김정재 · 김학용 · 유경준 · 김선교 · 김희국 · 강대식 · 이종배 · 박정하 · 조명희 · 정동만 · 서일준 의원 발의)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2022. 8. 19. 서일준 · 김정재 · 이종성 · 이주환 · 김용환 · 김선교 · 김학용 · 윤두현 · 유경준 · 박정하 · 양금희 · 지성호 · 김희국 의원 발의)

이상 2건 8월 2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상임 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보고서 제출

2020 회계연도 결산 부대의견 조치결과

(2022. 8. 21. 고용노동부장관 제출)